

항 소 이 유 서

사 건 2000노 00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

피고인 ○ ○

위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 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개진합니다.

다 음

1. 사실오인의 점

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합니다. 피고인이 ○○○역에서 ○○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 승차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 시각 즈음 ○○역에서 하차한 것은 사실이나,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김□□ 소유의 손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습니다.

2. 양형부당의 점

가사 원심과 같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정상이 있습니다.

- 가. 이 사건 피해품은 현장에서 즉시 소유자에게 회복되었습니다.
- 나. 피고인은 심장이 좋지 않아 수년 전부터 ○○대학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.
- 다.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입니다.
- 라. 피고인은 건축목공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.
- 마. 피고인은 1900. 이래 00년 이상의 수감생활을 하였습니다.
- 이들 사정에 비추어 보면, 피고인은 경제적 궁핍을 타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재범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.



2000. 0. 0.

위 피고인의 변호인 공익법무관 O O (인)